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소방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3.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2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17명”을 “1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청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9”를 “277”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236”을 “234”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230”을 “22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39”를 “551”로 하고, 소방공무원 계 “449”를 “459”로 하며, 소방준감 이하 “447”을 “457”로 하고, 일반직 계 “90”을 “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을 “9”로 한다.

별표 5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과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9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1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12. ~ 21. (생략)	12. ~ 21.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감사담당관) ① (생략)	제9조의2(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삭제></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준감의 정원은 7명을, 소방정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	② ----- ----- -----. ----- 18 명----- -----

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
으로 한다.

<신 설>

③ (생 략)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장)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
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2월 31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관 밑에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을 둔다.

② ~ ⑤ (생 략)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방정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
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방
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
관의 정원은 17명을 그 상한으
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5조(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장) ① -----

----- 2025년 12월 31
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소방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9</u>	<u>277</u>	-2
소방공무원 계	<u>236</u>	<u>234</u>	-2
•	•	•	
•	•	•	
소방준감 이하	<u>230</u>	<u>228</u>	-2
•	•	•	
•	•	•	

[별표 3]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39</u>	<u>551</u>	+12
소방공무원 계	<u>449</u>	<u>459</u>	+10
·	·	·	
소방준감 이하	<u>447</u>	<u>457</u>	+10
일반직 계	<u>90</u>	<u>92</u>	+2
3급 또는 4급 이하	<u>7</u>	<u>9</u>	+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2